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 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1. 11. 22

문교사회위원회

1. 심·사 결 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1월 12일

○ 회부일자 : 1991년 11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 73회 임시회

○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 11. 21)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가. 제안 사유

농업기계조작 기능 신장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선진영농 기술의 보급과 영농현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가. 농업기계공동실습소 설치 내용

설치교	위치	설치년월일	교육과정	교육인원	비고
청주농업 고등학교	청주시내덕 1동 322번지	1992. 4. 1	기당 2주	기당 30명	1년 9기 운영 예정

나. 조직

실습소에 연수과와 서무과를 두며, 청주농업고등학교 교장,

교감, 주임교사, 실과교사, 일반직원을 겸직하도록 함.

다. 입소 자격(교육대상)

- 1) 농업계고등학교 학생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 농업계 실과교사 및 기능직 공무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한바, 농업기계조작 기능 신장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선진 영농 기술의 보급과 영농현장에서의 적응능력 배양하고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교육기관 설치) 제2항 "교육감이 제1항의 교육기관을 당해 시·도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가.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 조례안 1부.